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신적 피해의 재판상 화해 성립 배제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2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신적 피해의 재판상 화해 성립 배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신적 피해의 재판상 화해 성립 배제(안 제18조제2항)

개정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존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상 화해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재판상 화해¹⁾가 성립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받게 됨.²⁾

그런데,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상 보상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8조제2항을 적용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³⁾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수소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임.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재판상 화해 [裁判上 和解] (법률용어사전, 2023.01.15., 이병태).

2)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를 규정한 헌법 제10조4)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2018.8.30., 2014헌바180등, 259[위헌, 각하]>

[결정요지 중 발췌]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일응 적절한 배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추가적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다음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률 개정 없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배상 등 권리행사가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